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서

[]신규생산예정지, []기존 생산지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생산지(토지 소재지)	토지 면적 (㎡)	파종·식재 면적(㎡)	파종·식재량		파종·식재 예정 연월
			종자 (kg)	종묘 (kg 또는 본)	
총 파종·식재면적	㎡	총 파종·식재량	종자: 종묘:	kg kg 또는 본	수확예정연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토양·종자 또는 토양·종묘에 대한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결과증명서 1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며, 종자 또는 종묘에 대해서는 타인이 받은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결과증명서를 포함합니다) 3. 생산예정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임야대장	

처리절차

